

# 「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11월 1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7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 
(2021년 12월 16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올림픽유산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평창군 레포츠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
- 관내 대규모 어드벤처 타워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변 관광지와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
-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한 유산조성과 주변 관광시설인 알펜시아, 스키점프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 기대

#### 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- 설치·명칭 및 위치(안 제4조)
- 업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이용 관련 사항(안 제6조 ~ 제8조)
-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준용 및 시행규칙 규정(안 제11조 ~ 제12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현진)

- 본 조례안은  
 평창군 스포츠·관광자원을 개발·확충함으로써, 관광객의 유치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목적이 있습니다.
  
- 조례안 주요내용은  
 안 제4조에서는 스포츠 체험시설의 설치에 따른 명칭 및 위치 규정으로 명칭은 “레포츠 스카이다워”, 위치는 “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239-1번지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 일원”으로 하며  
 안 제5조에서는 체험시설의 업무로서 홍보 및 안내, 이용자 편의제공, 이용료 징수, 운영규정의 제·개정 및 시행을 규정  
 안 제6조에서는 휴무일 및 이용자 준수사항  
 안 제7조에서는 이용기간 및 시간을  
 매년3월부터 11월까지 이용시간을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로

안 제8조에서는 이용료를 15,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 
정하도록 하였으며

안 제9조에서는 이용 제한 사유

안 제10조에서는 위탁운영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
- 조례안 대상인 “레포트스 스카이다워”는 지역특화 스포츠�관광 공모사업  
으로 가칭 “크리스탈 타워 체험시설”이름으로 2019년 9월 사업을  
시작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.

- 조례안 제6조제2항 관련입니다.

안 제6조제2항에서는 “이용자는 12세이상 65세이하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”

안 제9조제4호에서 “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호자  
동반하여 3살의 범위에서 낮추거나 높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.”

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안전상의 이유로 이용자의 나이를 제한하였지만, 불평등 및 인권논란을  
불러올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.

- 안 제8조와 관련하여서는

안 제8조제1항에서는 “이용료는 15,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 
규칙으로”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사용료·수수료의 징수에

관한 사항은 **조례로 정하도록** 되어 있습니다.

사용료 요금에 대한 부분은 사용료·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사용료 금액은 조례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또한, 부칙 제3조 적용례

“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군수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,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또는 그 이후 빠른시일내에 체험시설의 위탁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.”는

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규정에 위배되는 조항이기에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수정의결**

- 부칙 제3조(적용례)를 삭제
- 안 제8조제4항 “군수는 별표”를 “군수는 별표2”로 수정
- 안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

“① 군수는 체험시설 입구의 적합한 곳에 대표소를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그 이용권을 발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.”

○ [별표 1]을 다음과 같이 신설

스포츠체험시설의 이용료(제8조제1항 관련)

구 분	이용료(1명마다 기준)		비 고
	어 른	아 동·청 소 년	
개 인	12,000원	10,000원	
단 체	10,000원	8,000원	

<비고>

1. 아동·청소년 : 12세(조례 제9조제2항제1호 단서의 경우 9세)이상 19세 미만
2. 어른 : 19세 이상 65세(제1호 괄호 안의 경우 68세) 미만
3. 단체 :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스포츠·관광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스포츠·관광자원을 개발·확충함으로써, 군민의 복지증진, 관광객의 유치,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스포츠체험시설”이란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관할구역에서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.
  - 가. 운동 종목: 체력단련장
  - 나. 시설 형태: 가상체험 체육시설
2. “스포츠·관광관계법령 등의 규정”이란 스포츠 및 관광과 관계되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법령 등의 규정을 말한다.
  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, 제104조, 제139조 및 제144조
  - 나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4조 및 제9조
  - 다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 및 제13조
  - 라. 「관광진흥법」 제67조
  - 마. 그 밖에 스포츠·관광과 관련된 규정

**제3조(적용범위)**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스포츠·관광관

계법령 등의 규정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**제4조(설치·명칭 및 위치)**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평창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과 관광객 등에게 스포츠·관광 욕구의 지속적 충족과 그 체험기회의 다양한 제공을 위하여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(이하 “체험시설”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체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명칭: 레포츠(leisure sports) 스카이다워(sky tower)
2. 위치: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239-1번지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 일원

**제5조(업무 및 조직)** ① 체험시설은 그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홍보 및 안내
2. 이용하는 사람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
3. 이용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이용료(이하 “이용료”라 한다) 징수
4.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관련 운영규정(이하 “운영규정”이라 한다)의 제·개정 및 시행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체험시설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리책임자 및 필요한 직원을 두되, 그 정원·충원·복무·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다.

③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해당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로 하거나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규정의 제·개정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6조(이용 및 휴무일)** ① 제7조의 이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휴무일 외에는 제9조의 제한·제외대상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1. 1월 1일, 설날·추석(그 날에 한정한다)

2. 매주 월요일. 다만, 이 날이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정상근무일에 휴무한다.

3. 그 밖에 군수가 유지·보수 등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

② 이용자는 12세 이상 65세 이하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
③ 체험시설의 이용에서 이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공시설의 이용질서를 지켜야 한다.

2.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.

3. 음주·흡연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.

4. 관련 시설물을 파손·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.

5. 그 밖에 관리책임자(직원을 포함한다)가 설명하는 이용방법, 운영규정 등에 따라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무일을 정할 경우에는 그 예정 7일 전까지

해당 내용을 군 및 체험시설의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긴급한 때에는 제외한다.

**제7조(이용기간 및 시간 등)** ① 체험시설의 이용기간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로 하며,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군수가 체험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그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평일: 09:00시부터 17:00시 까지
2. 토요일·공휴일: 09:00시부터 18:00시 까지

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. 다만, 그 시간을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.

**제8조(이용료 등)** ① 군수는 체험시설 입구의 적합한 곳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그 이용권을 발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.

② 이용권의 매표시간은 이용 개시시각 30분 전부터 그 종료시각 30분 전까지로 한다.

③ 군수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체험시설의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게시해야 한다.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이용권의 뒷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1. 이용기간, 이용 및 매표시간
2. 이용자의 준수사항
3. 감면대상자 및 이용제한·제외대상자

4. 해당 시설의 홍보·안내 및 이용방법

5. 운용규정 중 이용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
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군수는 별표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율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 이 경우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.

**제9조(이용제한 및 제외)**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험시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.

1.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운영규정, 이용조건 등을 위반한 때

2. 본인, 다른 이용자 또는 체험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때

3. 흥기, 위험한 물품 등을 소지한 때

4. 제6조제2항 외의 사람. 다만,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호자 동반하여 3살의 범위에서 낮추거나 높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.

5.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

6.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

7. 그 밖에 군수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

**제10조(위탁운영)** ① 군수는 체험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,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능력을 갖춘 군 소재 법인·단체 등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해당 위탁운영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스포츠·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,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이용료의 수입으로 위탁운영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「관광진흥법」 제67조제3항에 따라 이를 스포츠·관광자원 등의 보존·관리 및 개발·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.

**제11조(준용)** 체험시설의 위탁운영, 수탁자의 사업비 지원보조금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,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」 등에 따른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체험시설 설치·운영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스포츠체험시설의 이용료(제8조제1항 관련)

구 분	이용료(1명마다 기준)		비 고
	어른	아동·청소년	
개 인	12,000원	10,000원	
단 체	10,000원	8,000원	

<비고>

1. 아동·청소년 : 12세(조례 제9조제2항제1호 단서의 경우 9세) 이상 19세 미만
2. 어른 : 19세 이상 65세(제1호 괄호 안의 경우 68세) 미만
3. 단체 :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

[별표 2]

이용료의 감면대상자(제8조제4항 관련)

구 분	감면대상자	비 고
1. 전액 면제	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그 자녀 나.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. 다만, 65세 이상 68세 이하의 노인으로 한다. 다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바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사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아. 그 밖에 군수가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	
2. 50/100 감경	가.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제1항의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(24세 미만인 자녀를 말한다)를 셋 이상 구성하고 있는 가구 나. 군민 및 「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람 다. 「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라. 그 밖에 군수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	

※ 비고

1. 아동·청소년: 12세(제9조제4호 단서의 경우에는 9세로 한다) 이상 19세 미만
2. 어른: 19세 이상 65세(제9조제4호 단서의 경우에는 68세로 한다) 이하
3. 단체: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